

제대군인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

해외건설협회(이하 “협회”)와 대한민국 육군(이하 “육군”)과 한국산업인력공단(이하 “공단”)은 제대군인의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 (목 적) 본 협약은 “협회”와 “육군”과 “공단”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하여 제대군인 해외진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조 (공통협력사항)

본 협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공통협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공단”이 운영하는 해외취업정보망(WORLD JOB, 이하 “월드잡”)에 구인·구직정보 등록 및 상호 정보 교류·활용
2. 제대군인 대상 맞춤형 교육(연수) 프로그램 운영 지원
3. 당사자 일방이 해외취업박람회 등 채용행사를 개최·참가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협조 요청 시 상호 협력하여 추진
4. 해외취업지원사업 홍보 등 기타 상호 협의에 의해 정한 사업

제 3 조 (기관별 역할) 본 협약에 따른 기관별 역할은 다음 각 항과 같다.

- ① “공단”은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“월드잡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 권한 부여 등 편의를 제공한다.
- ② “공단” 및 “협회”는 해외구인정보 제공 및 중동, 아시아지역 등 제대군인 기획취업 지원을 위하여 노력한다.
- ③ “육군”은 구인요건에 맞는 제대군인 인력풀 제공 및 우수자원을 추천하고, 제대군인 우수성 및 적합분야 홍보자료를 제공한다.
- ④ “공단”과 “육군”은 제대군인 해외취업에 따른 출국지원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며, 그에 따른 제반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⑤ “육군”은 “협회”가 운영하는 “해외건설 인재정보” 사이트에 제대군인 구직정보 등록 및 채용정보 활용을 위해 노력한다.



대한민국 육군
Republic of Korea Army



제 4 조 (협력방법) 제2조와 제3조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은 매 사업추진 시 각 당사자가 상호형평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합의하여 정한다.

제 5 조 (비밀유지) 각 당사자는 협약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등 비밀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 당사자가 부담한다.

제 6 조 (협약기간) 본 협약은 서명일로부터 1년 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기간에 대한 해지통보가 없으면 매년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연장된다.

제 7 조 (변경 및 해지)

1. 본 협약의 중요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2. 본 협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각 당사자는 서면으로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협약서 3부를 작성, 대표자에 의하여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2년 5월 8일

해 외 건 설 협 회
회 장 최 재 덕

대 한 민 국 육 군
참모총장 김 상 기

한 국 산 업 인 력 공 단
이사장 송 영 중